

# 포항지부 운영규칙

제정 : 2025년 3월 10일

## 제1장

### 제1조 [제정근거]

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(이하 조합) 규약 제47조(지부운영) 제③항 지부 규정 부칙 제2조(내규)에 근거하여 제정한다.

### 제2조 [명칭]

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(이하 지부)라 한다.

### 제3조 [사무소]

지부 사무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내에 두도록 한다.

### 제4조 [구성]

포항지부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속한 자 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. 단, 사업장 이하 단위(영업소, 사업소) 혹은 독자지회로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, 조직편제는 운영위에서 결정한다.

### 제5조 [대의원 배정 기준]

포항지부 대의원 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대의원 배정은 지회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며, 지회별 조합원 수 규모에 따라 대의원 선출 인원수를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.
2. 지회단위 조합원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지회장 및 조합대의원은 당연직(선거구 배정 인원 외) 지부대의원이 된다.
3. 지회장을 제외한 지회임원 및 분회장을 배치(선거구 배정 인원 포함) 할 수 있다. 단, 조합원 직선에 의해 선출된 지회임원 및 분회장은 대의원 선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4. 지회임원과 지회 집행위원을 제외하고 지부 대의원은 당연직 지회 대의원이 된다.
5. 지회별 지부 대의원선출 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#### 1) 1000명 이상 지회

조합원 30명당 1명으로 하고 단수는 15명으로 하며, 최저 40명으로 한다. 단, 지회 배정된 지부대의원 수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장 라인별 대의원 배정문제는 25-50명 내외로 대의원 선거구를 편성할 수 있다.

#### 2) 500명 이상 지회

조합원 25명당 1명으로 하고 단수는 13명으로 하며, 최저 25명으로 한다. 단, 지회 배정된 지부 대의원 수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장 라인별 대의원 배정문제로 20-40명 내외로 대의원 선거구를 편성할 수 있다.

#### 3) 300명 이상 지회

조합원 20명당 1명으로 하고 단수는 13명으로 하며, 최저20명으로 한다. 단, 지회 배정된 지부 대의원 수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장 라인별 대의원 배정 문제로 20-40명 내외로 대의원 선거구를 편성할 수 있다.

4) 100명 이상 지회

조합원 15명당 1명으로 하고 단수는 8명으로 하며, 최저 10명 이상으로 한다. 단 지회 배정된 지부 대의원 수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현장 라인별 대의원 배정 문제로 10-20명내외로 대의원 선거구를 편성할 수 있다.

5) 100명 미만 지회

조합원 10명당 1명으로 하고 단수는 5명으로 하며, 최저 2명 이상으로 한다. 단 지회 내 배정된 지부 대의원 수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장 라인별 대의원 배정 문제로 8-15명 내외로 대의원 선거를 편성할 수 있다.

### 제6조 [임원의 의무]

포항지부의 임원은 지부에 전임으로 활동하여야 한다.

### 제7조 [지회의 설치 기준]

포항지부의 지회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지회의 설치, 분할, 합병, 신설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2. 지회 명 변경은 지회 의결을 거쳐 지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.

### 제8조 [특별부과금]

포항지부 소속 조합원은 포항지부 특별부과금 세칙에 따라 특별부과금을 납부한다.

## 부 칙

### 제1조 [통상관례]

본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조합 규약과 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.

### 제2조 [세칙]

지부는 조합 규약, 규정 및 포항지부 운영규칙의 범위내에서 사업 운영에 관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### 제3조 [시행]

본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제4조 [경과규정]

변경된 제5조 [대의원 배정 기준]은 14기 1년 차부터 적용한다.